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4조)

다. 권한의 위임·위탁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2. 3. ~ 2. 9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권한의 위임·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